

제 1869 호
1994. 12. 24.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최 병 령
편집인 : 공 보 관 신 동 우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3143 호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2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로서로 고통분담 고루고루 행복분담”

2031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 따른 사상자 보상금지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12. 24

서울특별시장 최 병 텔

●서울특별시조례제3143호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 따른 사상자
보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수대교 붕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시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외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제3조(사상자의 범위 등) ①이 조례에서 "사상자"라 함은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지분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기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2.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 결정

3. 기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의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2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과장과 도로서설과장이 된다.

제5조(보상금) ①보상금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유족대표와 합의된 특별위로금으로 한다.

1. 사망자는 1인당 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부상자는 가족과 합의에 의하여 추후 시장이 정한다.

②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

제6조(보상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은 1995년 3월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자·국외출타자·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재심)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청구) ①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아니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환수) 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과오 지급 및 이중 지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공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시보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
- 2. 신청인 자격
- 3. 신청기간
- 4. 구비서류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안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수대교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제2항).

- 사상자 심사결정 (지급신청일부 터 30일이내)

- 보상금의 심의 결정

다. 보상금은 사망자 1인당 70,000천원, 부상자는 가족과 합하여 추후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보상신청기간 : 1995년 3월 30일까지 신청(안 제6조).

마. 보상금 지급청구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안 제10조).